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30

발의연월일: 2020. 7. 8.

발 의 자 : 김영호 · 김민기 · 맹성규

김민철 • 윤미향 • 정성호

강훈식 • 박성준 • 김상희

김용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·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 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·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 무수행의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1항제6호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 회의 추진위원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직을 겸하고 있는 지방의 회의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겸직 등 금지) ① 지방의	제35조(겸직 등 금지) ①
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	
없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6의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
	법」 제33조에 따른 조합설
	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또
	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
	조합의 임원
7. ~ 9. (생 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